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2호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규 칙 제 9 5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규 칙 제 9 5 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5

예 규

- 예 규 제 8 0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30

공 고

- 공 고 제 8 1 6 호 문화서 제2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45
- 공 고 제 9 6 8 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시송달 48
- 공 고 제 9 7 0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49
- 공 고 제 9 7 1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50
- 공 고 제 9 8 1 호 수용재결 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소래갯길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 51
- 공 고 제 9 8 3 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송달 52
- 공 고 제 9 8 4 호 수용재결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고잔동365-1번지 일원 소 2-2호선 도로개설공사] 53
- 보 건 소 공 고 제 2 2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55
- 보 건 소 공 고 제 2 3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57

고 시

- 고 시 제 6 0 호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 제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고 시 59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5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9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직렬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5점
2.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0.25점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언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제25조의3제3항 관련)

외국어	언어능력검정시험성적	가산점
영 어	토플(CBT 197점, IBT 71점), 토익 700점, TEPS 625점 이상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점
기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60점 이상	0.25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중 자격증 등의 가산점 적용 규정을 지방자치 단체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성과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의 제목 및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제25조의3제1항)
- 자격증 가산점 부여기준 마련 (제25조의3제2항)
- 언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 별표 신설 (별표 16)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5월 31일

남동구 규칙 제95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를 “회계관리”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실.과는 관서의 실.단.과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타 관서는 구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공무원을”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재정경제국장

나. 징수관 - 재정경제국장

다.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단·과장

라. 재무관 - 재정경제국장

마.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실·단·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재정경제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실·단·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 실·단·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카. 기금 관리관 - 소관 실·단·과장

타.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파. 지출원 - 회계.재무.지출업무담당

하.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단·과 서무업무담당

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같음)

2. 의회

- 가. 징수관 - 의회사무국장
- 나. 재무관 - 의회사무국장
- 다. 채권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 라. 부채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 마. 지출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 사.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3. 제1관서(동은 제5호에서 별도 지정)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 라.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소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또는 재무업무담당이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또는 세입업무담당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자
 -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소 서무업무담당
 -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 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
- 다.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 관서의 장
- 라.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마.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 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바.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무.재무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 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 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법제44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를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 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을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서의 장에게”를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관서의”를 “제1관서의”로,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출원과”를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출관,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각 실·과장”을 “기획예산실장 및 각 실·단·과장”으로, “제2항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정경제국장 또는 재무과장,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행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경비
8.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관서”를 “제1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을 “통합지출관, 주관”으로, “관서”를 “제1관서”로 한다.

제26조 중 “지출내역”을 “이상 지출내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로, “세무과장과 관서”를 “통합지출관, 세무과장, 제1관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서”를 각각 “제1관서”로, 같은 항 중 “지출원”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관서”를 “제1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을 “제1관서의 장, 통합지출관,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세무1, 2과장이”를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이”로,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의2”를 “시행령 제12조”로, “영제59조의3”을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31조 중 “관서”를 “제1관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년도 출납폐쇄 기한”을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다음연도 2월”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할 때에는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통합 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84조의 규정”을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관서의”를 “제1관서의”로, “각 실·과장 및 관서의”를 “통합 지출관, 본청 실·단·과장, 제1관서의”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관서의”를 “제1관서의”로, “각 실·과장 및 관서의”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단.과장, 제1관서의”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관서”를 “제1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관서의 장에게”를 “제1관서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49조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으로, “계좌입금”을 “계좌입금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4조”를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제48조에 따른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을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을 “경비는”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을 “경우에”로, “만한”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을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또는”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을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또는”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를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를 “시행령 제45조제2호”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른”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제69조의2의 규정”을 “제6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무과장”을 “통합지출관 및 세무과장”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을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금고계약의 방법)”을 “(금고약정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 내지 영 제73조의 규정”을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을 “현금지급명령을”로,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계좌지급명령”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통산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을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를 “현금지급명령통지”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감독”을 “관리·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 세입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이”를 “세무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를”를 “별지 제48호서식에서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로, “통한 구매의”를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등 현금으로”를 “등을”로, “영수인에 대하여”를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로 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을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32조 중 “구청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의 규정”을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를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로 한다.

제155조 다음에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삽입한다.

제156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를 각각 제164조부터 제168조까지로 하고, 제156조 및 제1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3. 제1호와 제2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57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이 한다(구의회,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66조(종전의 제158조) 중 “「지방자치법」 및”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으로 한다.

제10장에 제158조부터 제16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불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59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같음한다.

제160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58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61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제162조(보험료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16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4조 앞에 “제11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5-1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1. 의회사무국 2. 보건소 3. 남동공단지원사업소 4. 남동다문화사업소 5. 동 주민센터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

이 월 비 집 행 상 황 조 서

(단위: 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공사 기간	예산 액	공 사 비			시 도 비			보 상 비 지장물이전비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 목	통계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기 타			계			불 용 액	12월말 현공재정	완 예 정 공 일	이월사유
예산 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 별지 제31-1호서식 >

고 지 서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①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은행	××××-××-××××××××		
(반납자)		귀하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반 납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①			
(반납자) 성명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은행	××××-××-××××××××		
지출원 귀하			

영 수 증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①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은행	××××-××-××××××××		
(반납자)		귀하	

< 별지 제34호서식 >

과 오 납 금 현 금 반 환 명 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생년월일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생년월일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생년월일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본명령서 지참인 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①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주	성명		
	생년월일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 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			

< 별지 제35호서식 >

과 오 납 금 계 좌 반 환 명 령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	성명		
주	생년월일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	성명		
주	생년월일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	
금고	귀하		

년도			
회계		○○징수관 주관	
채	성명		
주	생년월일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부과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 금액을 채주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징수관	귀하		

< 별지 제55호 서식 >

현금지급명령

통상 NO. 0000000		통상 NO. 0000000		통상 NO. 0000000													
현금 지급 원부		현금지급명령통지		현금 지급 명령													
년도 회계		년도 회계		년도 회계													
NO		NO		NO													
절		절															
취		취															
선		선															
과목		채권자 계좌 과목		채권자 계좌 과목													
<table><tr><td>금</td><td>액</td><td></td></tr><tr><td>발행년월일</td><td></td><td></td></tr><tr><td>채권자</td><td></td><td></td></tr><tr><td>적요</td><td></td><td></td></tr></table>		금	액		발행년월일			채권자			적요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액																
발행년월일																	
채권자																	
적요																	
		년 월 일 000지출원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참인에 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귀하		년 월 일 000지출원													
				금고 귀하													
1cm 6.8cm		8cm		17cm													

<별지 제55-1호서식>

(계좌·현금) 지 급 명 령

20 회계연도
회계

결 재	지출원	금고

(단위 : 원)

연번	지급명령 번호	채권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 고
			금 용 기관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재요령>

- 1. 명령구분란에는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현금지급명령을 표시.
-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별지 제57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발신 : 남동구청장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일상경비 교부액			잔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	금회교부	합 계		

<별지 제58호서식>

일 상 경 비 교 부 통 지 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정 책	단 위	세 부	편 성 목	통 계 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63호서식>

위탁서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수납은행 : 은행

(계좌번호 :)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귀하

납입통지서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출납원 귀하

담당자	출납원	계장	과장
결재			

영수증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고지부서

납부자주소 :

성 명 외 건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금고 인

고지번호	현금종류	납부자	고지금액

납부자 귀하

<별지 제63-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계좌 입금용)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며,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조례가 폐지(2009.07.31.)되어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무회계규칙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제2조)
-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제18조, 제19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설(제156조~제163조)
- 서식 정비(별지 제17호, 제31-1호, 제34호, 제35호, 제55-1호, 제57호, 제58호, 제63호, 제63-1호)

예 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장 석 현

2017년 5월 31일

남동구 예규 제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은 문서로 위원을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또는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행정심판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지방법을 말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 위원장은 서기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 심의)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의결정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가표준액 결정 심의)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조례 심의) ① 구청장은 위원장에게 지방세 감면조례의 신설·연장·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〇〇〇〇-〇〇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사 요구서				
청 구 인	주소 · 사업장							
	성명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 호 (법 인 명)				전 화 번 호			
과 세 예 고 통 지 기 관								
청 구 대 상	과세대상물건							
	통지사유(유형) 및 근거							
	세 목	○ ○ 세	과 세 표 준		세	액		
		○ ○ 세						
		○ ○ 세						
		○ ○ 세						
계								
청 구 경 위	통지를 받은날				청 구 취 지			
	청구서 접수일				시 접 수 일			
	보정요구송달일				처리기한연장일			
	처 리 기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 정 사 유 서(안)		요구의견 : [결정사유서(안)별첨]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어 상기와 같이 청구경위와 결정사유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결정서

[illegible]

심사 안전에 대한 심사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년 월 일

○ ○ ○ 위 원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보

○○○○년 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과세전적부 심사 결과(건수)

(단위 : 건수)

합 계	심 사 결 과			기 타
	채 택	불 채 택	보 류	

불 임 :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 () 접수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 (032)453-○○○ /전송 032)453- / 이메일 : ○○○@ / 비공개

■ [별지 제4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대 리 인							
처 분 청								
과 세 물 건		소 재 지						
		종 수 별 량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과 세 표 준		세 목		세 액	
	고 지 일 자							
이의 신청 경위	처 분 청 의 통 지 를 받 은 날			보정요구일				
	이의신청일			보정이행일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 정 이 유		별 첨		

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의 안 번 호		제○○○○○-○○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청 구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대 리 인								
처 분 청									
과 세 물 건		소 재 지							
		종 별 수 량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과 세 표 준		세 목		세 액	
	고 지 일 자								
심사 청구 경위	처 분 청 의 통 지 를 받 은 날			보정요구일					
	심사청구일			보정이행일					
심사청구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 정 이 유		별 첨			

위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심사청구 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

지 방 세 심 의 위 원 회 심 의 의 건 서

[illegible]

심사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일 월 년

○ ○ ○ 위 원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7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수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세무과장)
(경유)

제 목 ○○○○년 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

○○○○년 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나. 장 소 :

다. 심의의결 결과(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유형별	합계	의 결 결 과							기타
			소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각하 기각	보류	
계	요구 의결									
이의 신청	요구 의결									
심사 청구	요구 의결									

붙 임 : 1. 심사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간 사

위원장

시행 - () 접수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 (032)453-○○○ /전송 032)453- / 이메일 : ○○○@ / 비공개

■ [별지 제8호 서식]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심의결과 통보서						
심 의 결 과	안 건 번 호		안 건 명		결 과	
기 타 의 건 (소수의견)						
참 석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과 - (.)호로 심의 요청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제2 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 변경) 심의결과 통보서

심 의 결 과	안 건 번 호	안 건 명		결 과		
기 타 의 건 (소수의견)						
참 석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과 - (. .)호로 심의 요청한 지방세 감면조례 신설(연장, 변경)에 대해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운영세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 회의 및 운영, 심사·의결 등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8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8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3-3번지 일원 주차난 해소, 주차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5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남동구 구월동 1103-3번지 일원 주차난 해소, 주차 질서 확립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3. 공영(노외)주차장 개요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유료화 시행 예정
문화서 제2공영주차장	남동구 구월동1103-3	21	3급지	2017. 7. 1

4. 월정기 주차요금

구 분	급 지	1회 주차권		전 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당		
노 외	3급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5. 공고방법: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6.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7. 5. 29 ~ 2017. 6. 19(21일간)

8. 의견제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 5. 29 ~ 2017. 6. 19(21일간)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교통행정과(주차시설팀)

- 전 화 : 032)453-2681 / FAX : 032)453-2889

-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 제2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3-3번지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시 송달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피부과자	주소지	미배달 사유	위반내용		비고
				소재지	위반내용	
1	최*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01, 1동 *0*호(간석동, 우*아파트)	폐문 부재	논현동 111-126 외1필지	무단축조, 근생, 조립식판넬 109㎡, 천막파이프조 49㎡, 벽돌조 166㎡, 조립식판넬 34㎡	부과예고
2	조*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0번길 2*(간석동)	이사	간석동 253-10	무단축조, 근생, 조립식판넬, 1.5㎡, 주택, 경량철골조, 10.5㎡,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99.76㎡ 근생, 연와조, 18㎡ 주택, 조립식판넬, 2㎡, 24.24㎡	부과예고
3	우*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4번길 1*6, 40*동*0*호(만수동, 주공아파트)	폐문 부재	수산동 55-2	무단용도변경, 창고, 일반철골조, 96.62㎡	시정명령

4. 공고기간 : 2017.05.29. ~ 2017.06.13.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5월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직권말소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를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05. 29. - 2017. 06. 18.(21일간)

○ 직권말소 내역

연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행정처분)
1	일반게임제공업 (2015-3)	구월 게임랜드	유O하	남동구 남동대로 757, 2층(구월동)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2017.05.19.)
2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009-6)	로하스 PC방	최O분	남동구 구월로 353, 2층 (만수동)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2017.05.19.)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①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 ②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관 및 문의처

- 처분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1008번지)
- 문 의 처 : 032)453-2143 (FAX 453-2139)

2017년5월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7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게임제공업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05.29. ~ 2017.06.18. (21일간)

2. 공고내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취소일자)
1	일반게임제공업 (2015-11)	스타 게임랜드	김 ○ 우	남동구 백범로 343, 2층(간석동)	• 사행행위 (환전 또는 환전알선)	등록취소 (2017.05.19.)

3. 영업의 제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①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4.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

5.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전화번호 : (032)453-2143 / 팩스(032)453-2139

2017년4월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5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위치: 인천 남동구 수산동 8-1번지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2017. 05. 30. ~ 2017. 06. 13.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영개발사업단(032-453-5682)
6. 송달대상자 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주소	보상대상토지	사 유	비 고
1	소유자	배*숙	서울시 은평구 녹번로 **	남동구 수산동 8-6	폐문부재	반송

7.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으로 인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압류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공시송달
2. 처분근거: 건축법 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의 관한 법률 제9조
3. 처분내용

연번	피 부과자	반송주소지	미배달 사유	부과대상 주소지	처분내용	체납액
2	백*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5, 10*동 *01호 (논현동, 논현유*엔*티 *단지)	폐문 부재	논현동 111-45	2016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경량철골조 근생 70㎡, 컨테이너 36㎡ 무단축조)	17,369,750원

4. 공고기간: 2017. 05. 31. ~ 2017. 06. 15.
5.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5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984호

**[고잔동365-1번지 일원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365-1번지 일원 소2-2호선)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서류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5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고잔동 365-1번지 일원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고잔동 365-1번지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7. 05. 30. ~ 2017. 06. 13.(14일간)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2)

6. 송달대상자 명단

소유 구분	성 명	주 소	대상토지 및 지장물소재지	사 유	비 고 (등기번호)
소유자	박*익	인천부 송현리 **	고잔동 462-21	주소불명	1899686458665
소유자	백*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마길*	고잔동 364-9	폐문부재	1899686458678
소유자	백*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고잔동 364-9	주소불명	1899686458679
소유자	오*제	인천광역시 남구학익소로 **번길 ***,**-*** (학익동,**아파트)	고잔동 341-23 지장물	이사	1899686458674
소유자	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	고잔동 477-2 고잔동 477-8	주소불명	1899686458667
소유자	정***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 *층(고잔동)	고잔동 359-18	수취인불명	1899686458662

7.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그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7-2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7. 06. 14.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7. 05. 30. ~ 2017. 06. 13.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반음식점	2015-0199056	곤스시	최**	만수서로52,1층11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6.30.	2017.06.14.
일반음식점	2015-0199415	어묵로	허**	백범로226번길30,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12.31.	2017.06.14.
일반음식점	2015-0200136	남도 계절밥상	신**	용천로70,지하1층B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4.10.	2017.06.14.
일반음식점	2015-0199411	남촌모구모구 즉석떡볶이	이**	호구포로535번길24,1층1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2.08.	2017.06.14.
휴게음식점	2015-0199237	길엄마의다 락방커피	길**	경인로520,1층10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0.31.	2017.06.14.
휴게음식점	2015-0199950	스티븐앤 로렌	조**	인하로507번길24,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2.04.	2017.06.14.
일반음식점	2011-0199106	고기카페논 현점	김**	논고개로 123번길 35, 2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4.04	2017.06.14.
일반음식점	2014-0199889	흑돈가인천 구월점	김** 외 9명	구월남로 123, 2,3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2.26	2017.06.14.
일반음식점	2009-0199513	김밥천국	김**	예술로 230, 청진네오스빌 10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4.30	2017.06.14.
일반음식점	2003*0199169	한우가	조**	남동대로 765번길 5, 1층~2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1.31	2017.06.14.
일반음식점	2006-0199743	반갑다 친구야	강**	인주대로 670, 인항콤비타워 11층 101호~101-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5.02.02	2017.06.14.
일반음식점	2012-0199875	명가 대박콘드레	김**	문화서로 4번길 19-1, 1층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2.31	2017.06.14.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7. 06. 13.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8

2017년5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7-2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5월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2017. 05. 30 ~ 2017. 06. 12 (14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1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1999-0199242 (구월2-99-1)	금강빌딩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32(구월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3)
 - 청문일시 : 2017. 06. 22.(목)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17-60호

개발제한구역 제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 4호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지목별 평균치의 개요

가. 기 준 일 : 2017년 1월 1일

나. 단위면적 : m²

다. 지목현황 : 28개 지목

라. 고시내역 : “별첨”

2017년6월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